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1-1호선)변경 결정안 심사보고서

2013. 12. 2(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1.

나. 제출자 : 인천광역시

다. 회부일자 : 2013. 11.

라. 상정일자 : 2013. 12. 2.(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건설교통국장 강 상 석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헌 기
- 질의 및 토론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대1-1호선은 72. 8월 최초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로 일부 부분 개설(전체 3,417m중 1,965m) 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주민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강화군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량 산정시 2033년 1일 교통량은 2,000대 미만으로 왕복 2차로 개설로도 도로용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를 위해 현행 결정도로 폭원을 조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

나. 주요 내용

○ 당 초

1) 대1-1호선 : L=3,417m, B=35m

○ 변 경

1) 대 1-1호선 : L= 240m, B=35m

2) 중2-631호선 : L=1,258m, B=18~25m

3) 중3-335호선 : L=1,500m, B=12m

○ 입안내용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대로 | 1 | 1 | 35 | 주간선 도로 | 3,417 | 갑곶리 339-2 | 신당리 638 | 일반도로 | | 72. 8. 23. | |
| 변경 | 대로 | 1 | 1 | 35 | 보조간선 도로 | 240 | 갑곶리 339-2 | 갑곶리 196-3 | 일반도로 | | | |
| | 중로 | 2 | 631 | 18~25 | 보조간선 도로 | 1,258 | 갑곶리 197-9 | 중2-4 | 일반도로 | | | |
| | 중로 | 3 | 335 | 12 | 보조간선 도로 | 1,500 | 중2-4 | 대산리 1205-1 | 일반도로 | | | |

○ 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대로1-1호선 | 대로 1-1호선 | ○변경 - 연장 : 3,417m → 240m | ○ 48번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로 대로1-1호선의 기능 축소에 따른 도로 폭원 및 기개설 현황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
| | 중로 2- 631 | ○변경 - 연장 : 3,417m → 1,258m - 폭원 : 35m → 18m~25m | |
| | 중로 3-335 | ○변경 - 연장 : 3,417m → 1,500m - 폭원 : 35m → 12m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972년에 최초 결정된 대1-1호선에 대한 교통량 분석과 기 개설되어 있는 현황 등을 반영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폭원을 조정하고 연장을 419m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이도형, 이제병, 김병철, 정수영, 이제호, 전원기, 전용철 의원
- 원안에 동의함.
-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1-1호선) 변경 결정안 1부. 끝.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 : 대1-1호선) 변경 결정 안

| | |
|----------|------|
| 의안 번호 | 1009 |
|----------|------|

제출연월일 : 2013. 1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가. 대1-1호선은 72. 8월 최초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로 일부 부분 개설 (전체 3,417m중 1,965m) 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주민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나. 강화군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량 산정시 2033년 1일 교통량은 2,000대 미만으로 왕복 2차로 개설로도 도로용량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예측됨
- 다. 따라서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를 위해 현행 결정도로 폭원을 조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

2. 주요 내용

가. 당 초

1) 대1-1호선 : L=3,417m, B=35m

나. 변 경

1) 대 1-1호선 : L= 240m, B=35m

2) 중2-631호선 : L=1,258m, B=18~25m

3) 중3-335호선 : L=1,500m, B=12m

3. 입안 내용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대로 | 1 | 1 | 35 | 주간선 도로 | 3,417 | 갑곶리 339-2 | 신당리 638 | 일반도로 | | 72. 8. 23. | |
| 변경 | 대로 | 1 | 1 | 35 | 보조간선 도로 | 240 | 갑곶리 339-2 | 갑곶리 196-3 | 일반도로 | | | |
| | 중로 | 2 | 631 | 18~25 | 보조간선 도로 | 1,258 | 갑곶리 197-9 | 중2-4 | 일반도로 | | | |
| | 중로 | 3 | 335 | 12 | 보조간선 도로 | 1,500 | 중2-4 | 대산리 1205-1 | 일반도로 | | | |

4. 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대로1-1호선 | 대로 1-1호선 | ○변경 - 연장 : 3,417m → 240m | ○ 48번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로 대로1-1호선의 기능 축소에 따른 도로 폭원 및 기개설 현황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
| | 중로 2- 631 | ○변경 - 연장 : 3,417m → 1,258m - 폭원 : 35m → 18m~25m | |
| | 중로 3-335 | ○변경 - 연장 : 3,417m → 1,500m - 폭원 : 35m → 12m | |

5. 주민 의견 및 청취 현황

가. 청취기간 : 2013. 9. 23. ~ 10. 6.(14일간)

나. 청취방법 : 일간신문 공고(경기일보,중부일보) 시보게재, 게시판 공고

다. 청취결과 : 의견 없음

6. 관계기관 의견(강화군)

- 시설결정된 이후 현재(20년이상)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구간의 도로폭을 35m 존치하여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 부분 개설된 구간의 도로폭을 현행대로 변경하는 것과 미 개설된 부분의 도로폭을 완화(35m→18~25m)하는 것은 그간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것으로 시설변경은 타당
- 변경안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설 결정후 미개설 부분 조속개설 요망

첨부 : 위치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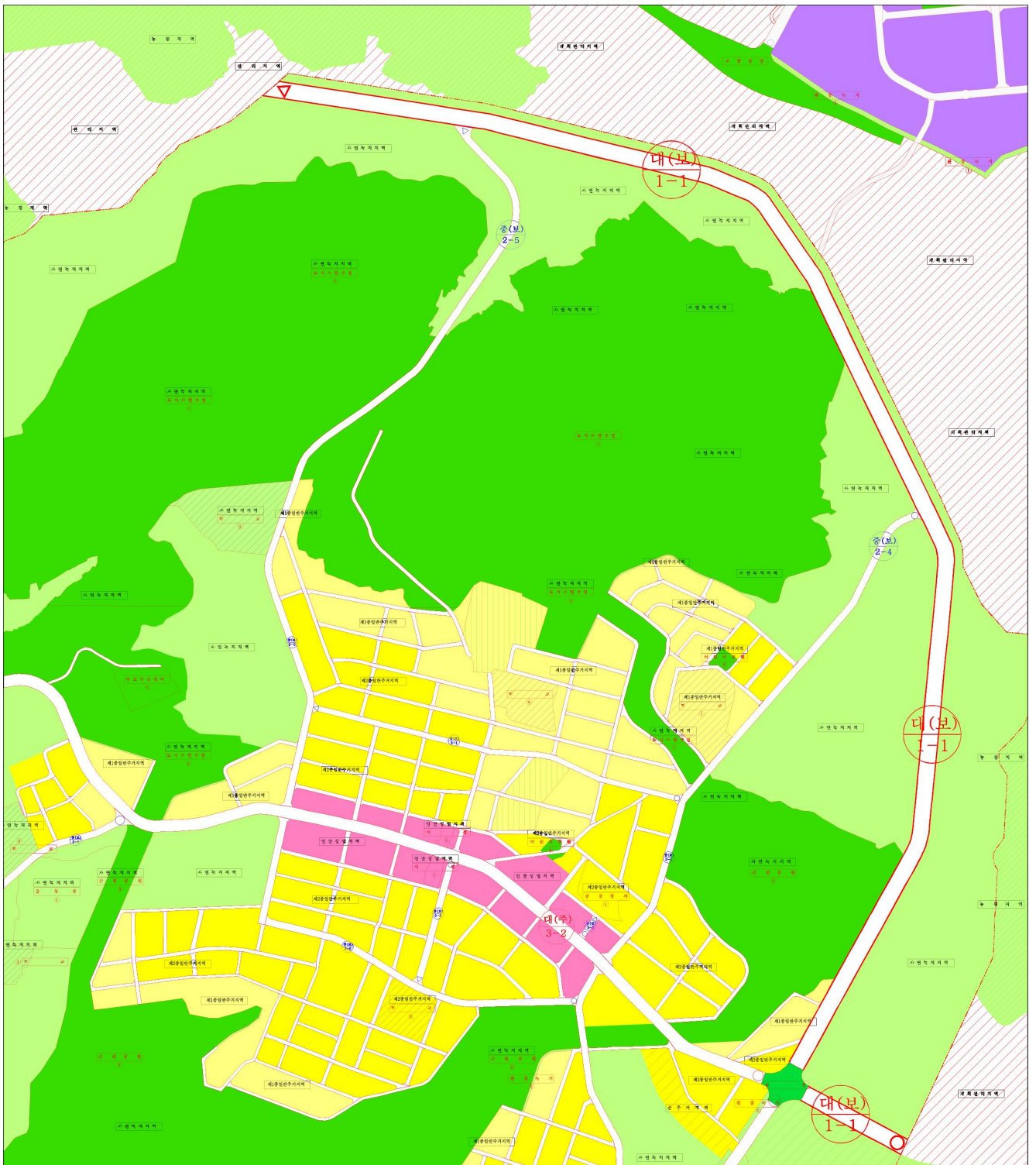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당초) 1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1부.

위 치 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도(당초)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도(변경)

